

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9월 15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5년 9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2005년 9월 23일

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 재 응

나. 제안이유

- 대형국책사업인 구미제2하수처리장 건설과 연계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
- 동사무소의 시설 노후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용자 불편해소

다. 주요내용

[취득재산]

(원평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)

- 토 지 : 2필지 738.7㎡
- 예정가격 : 736,484천원(공시지가 기준)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5조(지방의회 의결 사항)
-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, 같은법 시행령 제84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-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사유지를 취득하는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으로써, 원평1동사무소 신축부지 확보를 위하여 토지 2필지를 매입하는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